남북관계개선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의 안 번 호	696

제안연월일 : 2016. 7. .
제 안 자 : 국회운영위원장

주 문

가. 경색된 남북관계의 해소 방안을 모색하고, 남북관계 정상화와 교류협력 발전 방안을 논의하기 위하여 「국회법」 제44조에 따라 국회 내에 「남북관계개선 특별위원회」를 구성한다.

나. 위원 수는 18인으로 한다.

다. 특별위원회의 활동기한은 2016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안이유

북한의 4차 핵실험과 장거리 로켓발사 등으로 장기간 지속되고 있는 남북관계의 경색을 해소하고 남북교류협력관계의 정상화 및 발전 방안을 국회 차원에서 논의하기 위하여 「남북관계개선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려는 것임.